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0. 11. 7.
행 정 위 원 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년 10월 12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2000년 10월 21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76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2000년 10월 31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정진)

- 가. 개정이유
 -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사항과 관련하여 구민에 대한 종합복지, 편익시설의 제공과 문화의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민회관 사용승인 절차 및 제한조건 등을 대폭 완화 내지는 폐지하여 구민들이 동 회관을 좀더 자유롭게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음.
- 나. 주요내용
 - 사용승인절차 간소화(구민회관운영 위탁 및 15일 이상 임대시 구의회 사전승인 → 삭제)
 - 사용료반환제한 완화(사용예정일 3일전 계약취소 신청한 후 구청장이 이유있을 때 → 삭제)
 - 사용자설비규정 완화 (사용자가 설비 설치시 사전에 구 승인 → 경미한 사항은 예외)
 - 사용자의 손해배상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 →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김대완)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우리구 구민회관 시설을 구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을 없도록 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부분을 정비토록 2000년 3월 21일 행정자치부장관과 2000년 4월 7일 서울특별시시장의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업무지침에 따라 영등포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으로서 제4조제1항 구민회관의 운영관리 위탁, 제2항 일부 시설을 임대하거나 15일 이상 대여할 때는 사전에 구의회의 승인을 얻는 사항, 제10조제2항제3조 사용 예정일 3일전 계약취소 신청한 후 구청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납부사용료를 반환하는 규정, 제12조제1항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구민회관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은 삭제하고, 제11조(사용자의 설비)제1항에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일반적인 민법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은 삭제하여 구민이 편익시설을 적극적이고 보다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으로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0
----------	-----

제출년월일 : 2000. 10. 12.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사항과 관련하여 구민에 대한 종합복지, 편익시설의 제공과 문화의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민회관 사용승인 절차 및 제한조건 등을 대폭 완화 내지는 폐지하여 구민들이 동 회관을 좀더 자유롭게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음.

2. 주요내용

- 가. 사용승인절차 간소화(구민회관운영 위탁 및 15일 이상 임대시 구의회 사전승인 → 삭제)
- 나. 사용료반환제한 완화(사용예정일 3일전 계약취소 신청한 후 구청장이 이유 있을 때 → 삭제)
- 다. 사용자설비규정 완화 (사용자가 설비 설치시 사전에 구 승인 → 경미한 사항은 예외)
- 라. 사용자의 손해배상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 → 삭제)

3. 참고사항

- 가. 관련근거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기예 05090-1396(2000. 7. 26)】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의사항 : 없음
- 라. 입법예고결과 : 이견 없음

첨부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끝.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행	개정 (안)
제4조(운영 및 관리) ①구민회관은 구청장의 책임하에 운영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구민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 2. 구민회관의 일부시설을 임대 또는 15일 이상 대여하고자 할 때 3. 구민회관을 증·개축하거나 일부시설을 임대 또는 15일 이상 대여하고자 할 때 ②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①현행과 같음 제1호 삭제 제2호 삭제 제2항 삭제
제10조(사용료납부 및 반환) ②사용자는 사용승인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료 입장을 위한 회관사용일수가 2일 이상일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기본시설사용료를 분납할 수 있다. 3. <u>사용예정일 3일전 계약취소를 신청하여 구청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u>	②현행과 같음 제3호 삭제
제11조(사용자의 설비) ①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②제1항에 대하여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①현행과 같음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현행과 같음
제12조(사용자의 손해배상) ①사용자는 사용기간중 회관 및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①항 삭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①항중 제1호, 제2호 및 동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1①항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①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0. 11. 7.

행 정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년 10월 12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00년 10월 21일 회부

다. 상 정 일 자 : 제76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 (2000년 10월 31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정진)

가. 개정이유

- 영등포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으로 우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수혜범위 확대와 효율적인 기금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